

[학칙 신·구조문 대조표]

구분	현행	개정사유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4조의2(전공심화과정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)	<p>제4조의2(전공심화과정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) 본 대학에 두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ad3;"> <th rowspan="2">학과</th> <th colspan="2">입학정원</th> <th rowspan="2">계</th> </tr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ad3;"> <th>주간</th> <th>야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호텔조리학과</td> <td>20</td> <td>·</td> <td>20</td> </tr> <tr> <td>경영학과</td> <td>·</td> <td>20</td> <td>20</td> </tr> <tr> <td>사회복지학과</td> <td>·</td> <td>20</td> <td>20</td> </tr> <tr style="color: red;"> <td>실내디자인학과</td> <td style="color: red;">20</td> <td>·</td> <td style="color: red;">20</td> </tr> <tr> <td>경호경찰행정학과</td> <td>20</td> <td>·</td> <td>2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학과	입학정원		계	주간	야간	호텔조리학과	20	·	20	경영학과	·	20	20	사회복지학과	·	20	20	실내디자인학과	20	·	20	경호경찰행정학과	20	·	20	<p>모집단위 폐지 학과 삭제</p>
	학과		입학정원			계																						
		주간	야간																									
호텔조리학과	20	·	20																									
경영학과	·	20	20																									
사회복지학과	·	20	20																									
실내디자인학과	20	·	20																									
경호경찰행정학과	20	·	20																									
개정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4조의2(전공심화과정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) 본 대학에 두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ad3;"> <th rowspan="2">학과</th> <th colspan="2">입학정원</th> <th rowspan="2">계</th> </tr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ad3;"> <th>주간</th> <th>야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호텔조리학과</td> <td>20</td> <td>·</td> <td>20</td> </tr> <tr> <td>경영학과</td> <td>·</td> <td>20</td> <td>20</td> </tr> <tr> <td>사회복지학과</td> <td>·</td> <td>20</td> <td>20</td> </tr> <tr> <td>경호경찰행정학과</td> <td>20</td> <td>·</td> <td>2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학과	입학정원		계	주간	야간	호텔조리학과	20	·	20	경영학과	·	20	20	사회복지학과	·	20	20	경호경찰행정학과	20	·	20						
학과		입학정원			계																							
	주간	야간																										
호텔조리학과	20	·	20																									
경영학과	·	20	20																									
사회복지학과	·	20	20																									
경호경찰행정학과	20	·	20																									

[학칙 신·구조문 대조표]

구 분	현 행	개 정 안	개정사유
제5조(수업연한)	본 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. 다만, 건축과, <u>실내디자인과</u> 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.	본 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. 다만, 건축과, <u>뉴케이팝학과</u> 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.	모집단위 폐지학과 삭제 및 신설학과 추가

[학칙 신·구조문 대조표]

구 분	현 행	개 정 안	개정사유
제19조(전과)	<p>① 교내전과(이하 “전과”라 한다)는 1학년2학기, 또는 2학년1학기 초에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학적변동자가 복학 시 학과의 개편으로 인해 전과 할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하며, 사회복지학과와 아동보육과의 경우에는 1학년 2학기 전과를 허용하지 않는다.</p> <p>② 전과인원은 전출·전입학과 기준으로 입학정원의 10%범위 안에서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, 전입학과의 면접결과에 의거 합격한 학생에 한하여 허가한다. 다만, 모집단위 폐지로 인해 특별전과 할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할 수 있다.</p>	<p>① 교내전과(이하 “전과”라 한다)는 1학년2학기 또는 2학년1학기 개시전에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학적변동자가 복학 시 학과의 개편으로 인해 전과 할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하며, 사회복지학과와 아동보육과의 경우에는 1학년 2학기 전과를 허용하지 않는다.</p> <p>② 전과인원은 전출·전입학과 기준으로 입학정원의 20%범위 안에서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, 전입학과의 면접 결과에 의거 합격한 학생에 한하여 허가한다. 다만, 모집단위 폐지로 인해 특별 전과할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할 수 있다.</p>	<p>전과 허용범위 상향조정 및 문구수정</p>

[학칙 신·구조문 대조표]

구 분	현 행	개 정 안	개정사유
제25조 (교육과정)	<p>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하며, 학점 배정기준은 교양교과 2년제 최대 6학점, 3년제 최대 10학점으로 하며, 전문교과 2년제 최대 64학점, 3년제 최대 92학점으로 하고 전문교과 시수의 50%는 실험실습을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개정<23.09.19></p>	<p>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하며, 학점 배정기준은 교양교과 2년제 최대 6학점, 3년제 최대 8학점으로 하며, 전문교과 2년제 최대 64학점, 3년제 최대 92학점으로 하고 전문교과 시수의 50%는 실험실습을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</p>	3년제 교양 졸업학점 변경
제34조 (졸업 및 수료)	<p>① <생략></p> <p>②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“별지 제2호 서식”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1학년 수료: 36학점 이상 개정 <23.09.19></p> <p>2. 2학년 수료: 75학점 이상 개정 <23.09.19></p> <p>3. 3학년 수료: 112학점 이상 개정 <23.09.19></p>	<p>① <현행과 같음></p> <p>②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“별지 제2호 서식”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1학년 수료: 35학점 이상 개정</p> <p>2. 2학년 수료: 70학점 이상 개정</p> <p>3. 3학년 수료: 105학점 이상 개정</p>	졸업학점 변경에 따른 수료학점 변경
부 칙	신설	<p><u>제2조</u> (<u>졸업이수학점 축소에 따른</u> <u>경과조치</u>) <u>2024학년도 입학자부터</u> <u>적용한다. 또한, 2024학년도</u> <u>1학년으로 재입학한 경우에도</u> <u>축소된 졸업이수학점을 적용한다.</u></p>	졸업학점 변경에 따른 적용 학년도 명시

[학칙 신·구조문 대조표]

구 분	현 행	개 정 안	개정사유
제 27 조 (교과 이수단위)	<p>① (생략)</p> <p>②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2년제 75학점 이상, 3년제 112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. 다만, 교양교과와 전문교과의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으며, 2년제는 교양교과 6학점, 전문교과 50학점 이상, 3년제는 교양교과 8학점, 전문교과 7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학생은 매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1학점까지 신청 이수할 수 있다. 다만, 장애학생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2학점 미만을 이수할 수 있다.</p>	<p>① (현행유지)</p> <p>②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2년제 70학점 이상, 3년제 105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. 다만, 교양교과와 전문교과의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으며, 2년제는 교양교과 6학점, 전문교과 50학점 이상, 3년제는 교양교과 8학점, 전문교과 7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현행유지)</p> <p>④ 학생은 매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0학점까지 신청 이수할 수 있다. 다만, 장애 학생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2학점 미만을 이수할 수 있다.</p>	졸업학점 변경에 대한 이수학점 수정

[학칙시행세칙 신·구조문 대조표]

구 분	현 행	개정사유												
제6조의2(전과)	<p>제6조의2(전과)</p> <p>④ 전출학과에서 이미 이수한 교양학점과 전공학점을 동일하게 전입학과의 학점으로 인정하되 전입학과에 필수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해야한다. 또한, 학칙 제27조제2항 기준을 충족해야 졸업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전입학과 필수이수학점 >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28 689 1232 846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 분</th> <th colspan="2">전입학과 이수학점</th> </tr> <tr> <th>2년제</th> <th>3년제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2019년 이전</td> <td>50</td> <td>82</td> </tr> <tr> <td>2019년 이후</td> <td>46</td> <td>74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전입학과 이수학점		2년제	3년제	2019년 이전	50	82	2019년 이후	46	74	전입학과 전공과목 필수이수학점 변경 및 문구수정	
	구 분		전입학과 이수학점											
		2년제	3년제											
	2019년 이전	50	82											
	2019년 이후	46	74											
개 정 안														
<p>제6조의2(전과)</p> <p>④ 전출학과에서 이미 이수한 교양학점과 전공학점을 동일하게 전입학과의 학점으로 인정하되 전입학과에 전공과목 필수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해야한다. 또한, 학칙 제27조제2항 기준을 충족해야 졸업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전입학과 전공과목 필수이수학점 >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28 1176 1232 1377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 분</th> <th colspan="2">전입학과 전공과목 필수이수학점</th> </tr> <tr> <th>2년제</th> <th>3년제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2019년 이전</td> <td>50</td> <td>82</td> </tr> <tr> <td>2019년 이후</td> <td>46</td> <td>74</td> </tr> <tr> <td>2024년 이후</td> <td>40</td> <td>62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전입학과 전공과목 필수이수학점		2년제	3년제	2019년 이전	50	82	2019년 이후	46	74	2024년 이후	40	62
구 분		전입학과 전공과목 필수이수학점												
	2년제	3년제												
2019년 이전	50	82												
2019년 이후	46	74												
2024년 이후	40	62												

[학칙시행세칙 신·구조문 대조표]

구 분	현 행	개 정 안	개정사유
제24조(타과 교과목 수강)	<삭제> 개정<2022.06.13.>	<u>타 학과 수강 시 이수 구분은 일반 으로 한다. 단 이수 구분이 교양일 경우 교양 학점으로 인정한다.</u>	타학과 수강신청시 이수학점 내용 추가

[학칙시행세칙 신·구조문 대조표]

구 분	현 행	개 정 안	개정사유
제7조의2 (학점인정)	② 본 대학과 협약을 맺은 국내·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에서 행하는 장기현장실습 과정은 최대 20 학점까지 장기현장실습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	② 본 대학과 협약을 맺은 국내·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에서 행하는 장기현장실습 과정은 최대 16 학점까지 장기현장실습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	총 졸업학점 축소로 인한 학점 조정
제18조 (수강신청)	② 전 학기에 미 취득한 과목은 21 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간, 야간 구분 없이 재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.	② 전 학기에 미 취득한 과목은 20 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간, 야간 구분 없이 재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.	총 졸업학점 축소로 인한 수강신청 가능학점 조정
제26조의2 (폐강)	개설과목의 수강신청인원이 20 명 이하일 경우 해당과목을 폐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----- ----- -----	개설과목의 수강신청인원이 15 명 이하일 경우 해당과목을 폐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----- ----- -----	입학정원의 최소 단위변경으로 인한 수정
제52조 (후기졸업)	1. 졸업에 필요한 미취득 학점이 24 학점 이내인 자	1. 졸업에 필요한 미취득 학점이 20 학점 이내인 자	수강신청 가능학점 조정
제53조 (발급사무)	3. 수료증명서 : 당해 학기의 등록을 필하고 각 학년의 교과목을 이수하여 총 취득학점이 1학년 36 학점 이상인 자, 2학년 75 학점 이상인 자, 3학년 112 학점 이상인 자 개정<23.09.19.>	3. 수료증명서 : 당해 학기의 등록을 필하고 각 학년의 교과목을 이수하여 총 취득학점이 1학년 35 학점 이상인 자, 2학년 70 학점 이상인 자, 3학년 105 학점 이상인 자	총 졸업학점 축소로 인한 학점 조정